

의안 번호	1909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】</p> <h1 style="margin: 0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 의 일 자 : 2022. 2. 4.(금)
- 나. 발 의 자 : 문희성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4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3. 17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문희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기본이념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12조)
-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 ~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큰 거 법 규

「노인복지법」

[시행 2021. 6. 30.] [법률 제17776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